



2025. 12.

좌석이 정해진 | 실내 공연장

공연 관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



문화체육관광부



한국산업기술시험원
공연안전지원센터

목 차

1. 공연 주최자	1
2.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	3
3.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	5

본 자료는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전제로 하며, 좌석이 정해진 실내 공연에서 공연 주최자,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, 관할 지자체가 관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서 법적 의무나 강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.

본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공연의 특성과 시설 및 장소의 운영 및 환경 상황에 맞게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1 공연 주최자

○ 공연 주최자 :

점검일자 : 년 월 일

구분		점검 사항	확인
공연 준비	[A] 공연시설 및 장소 적정성	a) 공연시설 및 장소의 안전성 확인	
		- 계단·단차·통로 등에 위험(미끄러짐·넘어짐 등)은 없는가?	
		- 무대 및 객석 주변 장애물이나 적치물은 없는가?	
		- 소방설비(소화기·스프링클러·비상경보기 등)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가?	
		- 피난설비(피난구·유도등·통로 유도등 등)가 정상 작동하고 시야 확보가 가능한가?	
		- 특수효과(불꽃·안개·레이저 등) 사용 시 감지기 오작동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는가?	
	[B] 관객 안전 관리 계획 수립	a) 객석 구역 및 동선 관리	
		- 객석 구역별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안내되어 있는가?	
		- 객석 구역별 입·퇴장 동선이 혼잡 없이 운영될 수 있는가?	
		- 군중 혼잡 구역에 대한 사전 파악 및 계획을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객석 구역마다 피난 경로가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는가?	
		b) 압사 및 밀집 사고 예방 계획	
		- 인파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(무대 전면, 중앙 통로 등)을 사전 파악했는가?	
		- 혼잡 발생 시 관객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비상 상황 발생 시 공연을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 조치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?	
	[C] 비상 대응 계획 수립	a) 비상 대응계획 수립 관련 사항	
		- 비상 상황(화재·정전·기계 결함 등) 발생 시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안내 장비(비상 방송·경보 장비·확성기 등)가 준비되어 있는가?	
		-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 대피·피난 관련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?	
	[D] 재해대처 계획 검토	a) 재대해처계획 검토 관련 사항	
		- 공연시설 및 주요설비가 재해대처계획상의 피난동선에 방해되지 않는가?	
		- 공연 주최자·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 간의 대응·연락체계가 확보되어 있는가?	
		- 공연장 위험요인(화재·정전·관객 안전사고 등)에 대한 대응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?	

구분		점검 사항	확인
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	[E] 재해대처 계획 실천	a) 재해대처계획 실천 관련 사항	
		- 공연 운영이 재해대처계획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가?	
		- 공연 전 관객에게 안전 관련 정보(피난 방법·위험 요인·주의사항 등)를 제공했는가?	
		- 공연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?	
		- 안전 관련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리하고 있는가?	
	[F] 관객 안전 관리 인력 배치	a) 관객 안전관리 인력 교육	
		- 관객 안전관리 인력이 역할과 비상 대응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?	
		- 군중 밀집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?	
		- 공연장 구조(출입구·계단·통로·비상구 등)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가?	
		- 비상 상황 발생 시 사용하는 안내장비(비상 방송·확성기·무전기 등)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?	
		b) 관객 안전관리 인력 배치	
		- 혼잡 예상 구역(출입구·계단·통로 등)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었는가?	
		- 객석 구역별로 안내 및 안전 관리 인력이 충분한가?	
		- 무대 접근 등 위험한 행동을 통제할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었는가?	
	[G] 관객 안전 확보 조치	a) 관객 입·퇴장 전 안전관리 관련 사항	
		- 출입구·계단·통로 등 위험요인을 공연 전 점검하고 제거하였는가?	
		- 대기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안전 안내 표지 및 비상구 표시 등 잘 보이게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입·퇴장 절차를 관객에게 사전 안내하였는가?	
		b) 관객 입·퇴장 중 안전관리 관련 사항	
		- 계획된 시간과 구역에서 관객의 입·퇴장이 진행되고 있는가?	
		- 입·퇴장 중 군중 혼잡 여부를 모니터링할 인력 또는 장비가 배치되었는가?	
		-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가?	

2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용

○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

점검일자 : 년 월 일

구분		점검 사항	확인
일상 운영	[A] 시설 및 장소 안전 정보 제공	a) 주요 시설물 및 설비 관련 안전 정보 제공	
		- 소방설비(소화기·스프링클러·비상경보기 등)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주최자에게 안내하고 있는가?	
		- 피난설비(피난구·유도등·통로유도등 등)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있는가?	
		- 대관 규정 및 자체 안전규정을 주최자에게 제공하고 준수토록 안내하고 있는가?	
	[B] 시설 및 장소 점검· 관리	a) 시설 및 장소의 점검·유지관리 관련 사항	
		- 건축물 용도·구조가 공연 운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가?	
		- 소방시설(소화기·스프링클러·비상경보기 등)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가?	
		- 피난설비(피난구·유도등·통로유도등 등)가 정상 작동 상태이며, 가려짐·훼손·장애물이 없는가?	
		- 객석·통로·계단에 적치물 또는 위험요인(파손·단차·난간 등)이 없는가?	
		- 환기·조명·전기·기계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가?	
		- 객석·무대 주변 시설물에 방염 적용이 유지되고 있는가?	
		- 공연장 내 임시 설치물(장식·장비·부스 등)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되었는가?	
공연 준비	[C] 공연 전 시설 점검	a) 공연시설 및 장소 사용자와 공연 전 합동 점검 관련 사항	
		- 소화설비(소화기·소화전) 및 응급장비(AED 등)의 수량·위치·상태가 적절한가?	
		- 피난설비(피난구·유도등·통로 유도등 등)가 정상 작동하며 가려지지 않았는가?	
		- 피난경로(통로·계단·출구)에 장애물이 없어 전 구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가?	
		- 객석·통로·계단 내 위험요인(파손·단차·난간 등)을 사전 확인했는가?	
	[D] 비상 대응 체계 구축	a) 비상 대응체계 구축 관련 사항	
		- 비상 연락망(소방·경찰·의료기관)이 최신 정보로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비상 상황 발생 시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의 대응 역할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비상 상황(화재·정전·설비 고장·관객 사고 등) 발생 시 우선 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?	
		- 안내 장비(비상 방송·확성기·무전기 등)가 정상 작동하고 즉시 사용 가능한가?	
	[E] 재해대처	b) 재대해처계획 작성 및 신고 관련 사항	
		-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에 공연법 제11조에 따른 필수항목이 빠짐없이 적정	

구분		점검 사항	확인
	계획작성 및 신고	하계 포함되었는가?	
		- 당해 연도 수립된 재해대처계획이며, 법적 요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?	
		- 공연장의 구조·피난 동선 및 계획·시설 상태가 재해대처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?	
		- 비상 상황 발생 시 관객 안전관리 요원의 역할과 임무가 재해대처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?	
		- 신고 기한 준수 등 행정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가?	
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	[F] 자체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점검	a) 자체 안전 규정 준수 및 안전 관련 법령 이행 점검 관련 사항	
		- 공연장 자체 안전 규정이 공연 운영 과정에서 준수되고 있는가?	
		- 공연 중 위험요인 발생 시 공연 주최자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는가?	
		- 합동 사전 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이 모두 제거되었는가?	
		- 소방·피난설비가 공연 직전까지 정상 상태인지 최종 점검했는가?	
	[G] 관객 입·퇴장 모니터링	a) 관객 입·퇴장 시 안전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련 사항	
		- 공연 주최자의 계획에 따라 지정된 동선 및 구역에서 입·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?	
		- 군중 혼잡 발생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?	
		- 혼잡 발생 시 즉시 통제·유도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?	
		- 퇴장 시 출입구·통로·외부 공간이 혼잡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되고 있는가?	

3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

○ 관할 시·군·구 담당자

점검일자 : 년 월 일

구분		점검 사항	확인
공연 준비	[A] 재해대처 계획 점검	a) 재해대처계획 점검 관련 사항	
		- 제출된 재해대처계획에 공연장의 시설 및 구조(출입구·통로·계단·객석 등)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?	
		- 제출된 재해대처계획이 공연법 제11조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? (비상조치, 피난계획, 안전관리조직, 안전관리비, 대피안내 등)	
		- 소방설비(소화기·스프링클러·비상경보기 등) 및 피난설비(피난구·유도등·통로 유도등 등) 관련 내용이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?	
		b) 객석 구역 수용인원 및 관리 계획 적정성 검토 관련 사항	
		- 구역별·층별 관객 관리 계획이 군중 혼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?	
		- 관객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가?	
		- 취약계층(장애인·노약자 등) 보호·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?	
		c) 유관기관 통보 및 지원 필요성 검토 관련 사항	
		- 공연장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관할 소방서·경찰서 등 협조 요청을 검토하였는가?	
		- 유관기관(소방서·경찰서·의료기관 등) 비상 연락망 및 협조 절차가 재해대처계획 안에 작성되어 있는가?	
		d) 재해대처계획 검토 및 보완 요구 관련 사항	
		- 재해대처계획상 미비한 부분이 확인된 경우, 보완을 요구했는가?	
		- 보완 요청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했는가?	
	[B] 현장점검 (권장)	a) '[A] 재해대처계획 점검'에 따라 현장 점검이 요구되는 경우	
		- 현장 점검 시, 제출된 재해대처계획과 실제 공연장 운영환경이 일치하는가?	
		- 시설 내 소방설비(소화기·스프링클러·경보기 등) 및 피난설비(피난구·유도등·통로 유도등 등)가 정상 설치·관리되고 있는가?	
		- 객석·무대·통로 주변에 장애물 또는 위험요인이 없는가?	
		- 군중 밀집 예상 구역의 안전 조치 및 관리가 되고 있는가?	
		- 외부 공간에 위험구역(단차·노면 파손·주차 혼잡 등)이 없는가?	
공연 시설 및 장소 사용	[C] 이상징후 정보 수집 및 전파 연락체계	a) 주변 이상징후 정보 수집 및 전파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	
		- 공연시설 또는 주변 지역의 이상징후(기상 악화, 사전 민원, 위험 공사 등)를 파악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있는가?	
		- 관할 소방서·경찰서 등과의 정보 공유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는가?	

구분		점검 사항	확인
		-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공유할 연락체계가 있는가?	
		- 이상징후 발생 시 이를 공연 주최자 및 공연시설 및 장소 관리자에게 신속히 알릴 수 있는가?	
	[D]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	a)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관련 사항 -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공연이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자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았으며, 사용 금액 및 용도가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였는가?	